

■ 분양일정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5/14	15	16	17	18	19 GRAND OPEN	20
21	22	23	24	25	26	27 부처님 오신 날
28	29	30 특별공급 청약	31 1순위 청약	6/1 2순위 청약	2	3
4	5	6 현충일	7	8 당첨자 발표	9	10
11	12	13-14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15	16	17
18	19 정당계약 1일차	20 정당계약 2일차	21 정당계약 3일차	22	23	24

※ 견본주택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실 경우 관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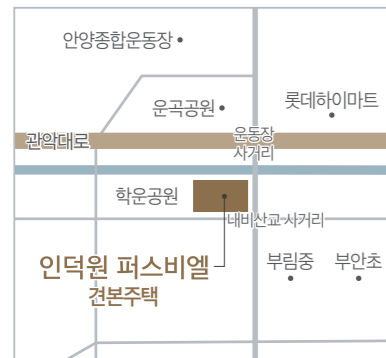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IRSBIEL

인덕원 퍼스비엘

| 분양안내 |



총 2,180세대 중 일반분양 586세대 | 49㎡ / 59㎡ / 74㎡ / 84㎡

문의 1599-8707

(단위: 세대, 원)

- **공급위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의왕내손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7층~ 34층 14개동 총 2,180세대 중 일반분양 5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공급 1,416세대(보유지 21세대 포함)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
 특별공급 289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5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m)

주택형 (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49.6000A	49A	49.6000	17.4600	67.0600	45.4200	112.4800	22.3647	215	21	18	40	4	20	103	112	4
49.4000B	49B	49.4000	17.5500	66.9500	45.2500	112.2000	22.3280	99	11	8	19	2	9	49	50	3
59.4400A	59A	59.4400	20.7700	80.2100	54.4300	134.6400	26.7503	90	8	10	17	3	9	47	43	8
59.5000B	59B	59.5000	20.9200	80.4200	54.4900	134.9100	26.8203	144	12	14	27	5	14	72	72	5
74.7600	74	74.7600	26.1000	100.8600	68.4700	169.3300	33.6372	12	2	2	1	1	0	6	6	5
84.5500A	84A	84.5500	28.0700	112.6200	77.4400	190.0600	37.5592	26	3	6	1	2	0	12	14	10
합계								586	57	58	105	17	52	289	297	3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해당(동)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면적	건축비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3.10.15	2024.04.15	2024.10.15	2025.03.15	2025.08.15		2026.01.15	입주지정일	
49A	105동 1, 2, 4, 5, 6호 라인 106동 1, 3, 4, 5호 라인	215	1층	4	146,722,420	362,277,580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2층	4	151,622,776	374,377,224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3층	9	154,793,594	382,206,406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4층	9	156,234,875	385,765,125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5층	9	157,964,413	390,035,587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6-10층	45	158,540,925	391,459,075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11-15층	45	159,405,694	393,594,306	553,0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6-20층	45	161,135,231	397,864,769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21-32층	45	162,576,512	401,423,488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49B	103동 3, 4호 라인 105동 3호 라인 106동 2호 라인	99	1층	3	141,533,808	349,466,192	491,0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2층	3	145,857,651				360,142,349	506,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3층	4	149,028,470				367,971,530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4층	4	150,469,751				371,530,249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5층	4	152,199,288				375,800,712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6-10층	20	152,775,801				377,224,199	53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11-15층	20	153,640,569				379,359,431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16-20층	20	155,081,851				382,918,149	538,0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1-32층	21	156,523,132				386,476,868	543,0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59A	102동 1, 3, 4호 라인 103동 2호 라인 104동 1, 2, 4, 5, 6호 라인 107동 3, 4, 5호 라인 108동 1, 2, 4, 5, 6호 라인 109동 1, 2, 4, 5, 6호 라인 110동 1, 2, 4, 5, 6호 라인	90				1층	8	202,932,384	501,067,616	704,0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11,200,000
			2층	12	209,562,278	517,437,722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218,100,000			
			3층	24	213,886,121	528,113,879	742,0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22,600,000			
			4층	25	215,903,915	533,096,085	749,0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5층	5	218,209,964	538,790,036	757,0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6-7층	10	219,362,989	541,637,011	761,0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8-20층	3	222,533,808	549,466,192	772,0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31,600,000			
			21-23층	3	224,839,858	555,160,142	780,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59B	104동 3호 라인 107동 1, 2호 라인 108동 3호 라인 109동 3호 라인 110동 3호 라인	144	1층	5	198,896,797	491,103,203	690,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207,000,000
						2층	5	205,238,434	506,761,566	712,0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213,600,000
3층	5	209,562,278				517,437,722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218,100,000			
4층	5	211,580,071				522,419,929	734,0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20,200,000			
5층	5	213,886,121				528,113,879	742,0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22,600,000			
6-10층	30	214,750,890				530,249,110	745,0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11-15층	30	215,903,915				533,096,085	749,0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16-20층	30	218,209,964				538,790,036	757,0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21-28층	26	220,227,758				543,772,242	764,0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34층	3	222,245,552				548,754,448	771,0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231,300,000			

약식 표기	해당(동)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면적	건축비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3.10.15	2024.04.15	2024.10.15	2025.03.15	2025.08.15		2026.01.15
74	101동 2호 라인 111동 2호 라인 112동 2호 라인 113동 4호 라인 114동 2호 라인	12	1층	5	252,512,456	623,487,544	876,0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262,800,000	
			2층	5	260,583,630	643,416,370	904,0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271,200,000	
			3층	2	266,060,498	656,939,502	923,0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276,900,000	
84A	101동 3, 4호 라인 111동 3, 4호 라인 112동 3, 4호 라인 113동 2, 3호 라인 114동 1, 4호 라인	26	1층	10	292,291,815	721,708,185	1,014,0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304,200,000	
			2층	10	301,516,014	744,483,986	1,046,0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104,600,000	313,800,000	
			3층	4	307,857,651	760,142,349	1,068,0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320,400,000	
			4층	2	311,028,470	767,971,530	1,079,0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323,700,000	

■ 신청일정 및 장소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정당 당첨자(특별공급 / 일반공급) : 2023.06.10(토) ~ 2023.06.14(수)(10:00 ~ 16:30)
제출처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 - 경기도 동안구 비산동 1100-3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행위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합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 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해외 체류 증명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근원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10년 이상 근무부 기간 명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 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속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덕원 퍼스비엘 분양안내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일반공급 (가점제)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19)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6.19(월) ~ 2023.06.21(수) / 3일간 10:00 ~ 16:30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393301-04-101792	내손라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외3)
중도금 / 잔금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해당 등·호수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상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시: 101동 701호 홍길동 → 1010701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국민은행 393301-04-101792, 내손라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외3))로 관리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충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60% 이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6회차 중 1~6회차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납부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을”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을 의미하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 입주지정기간에 따름.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나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타입	금액	비고
49A, 49B, 59A, 59B, 74, 84A	발코니 확장	기본형	발코니 확장	49A	15,400,000	
				49B	12,700,000	
				59A	14,800,000	
				59B	14,300,000	
				74	20,300,000	
				84A	23,000,000	

인덕원 퍼스비엘 분양안내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1.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되었으며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8.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9. 발코니 바닥 턱은 사용 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 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또는 유상음선 선택 유무 등에 따라 설치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인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항목으로 인한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시, 주방과 드레스룸, 발코니2, 거실 등 세대 확장 구간에 설치되는 마감재 및 가구 등 추가 제공품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천시 비확장 발코니 내부에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소음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평형에서는 미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인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일부창호 제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미확장부분(예를 들어 침실1발코니 외측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비확장 시에는 발코니 미확장부분의 외벽 오픈 구간에는 별도의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형에 따라 선풍통 배수관이 돌출 벽체에 차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거나 바라며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재질(철재, 유리)은 발코니 확장, 세대별 옵션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난간의 사양, 규격, 높이, 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재질(철재, 유리)에 따라 각 세대별로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동 지상출입구 등 공용구간에 국기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 목	기본형(무상) 1안	선택형(유상) 2안	선택형(유상) 3안	공급 금액			비 고	
					타입	2안	3안		
49A, B / 59A, B / 74 / 84A	현관 중문	미설치	여닫이 중문	-	49A	1,450,000			
					49B	1,500,000			
					59A	1,400,000			
					59B	1,450,000			
					74	1,430,000			
	거실/주방 바닥재	강마루	타일 (600X600mm)	3연동 중문	-	84A	1,430,000		
						49A	620,000		
						49B	570,000		
						59A	640,000		
						59B	650,000		
주방 벽/상판 마감재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체: 타일 (300X600mm)	상판,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벽체: 세라믹 타일	-	74	810,000			
					84A	850,000			
					49A	1,452,000	1,950,000		
					49B	1,534,000	1,950,000		
					59A	1,443,000	2,000,000		
					59B	1,229,000	1,850,000		
					74	2,037,000	3,000,000		
					84A	1,962,000	2,800,000		

타입	품 목	기본형(무상) 1안	선택형(유상) 2안	선택형(유상) 3안	공급 금액			비 고	
					타입	2안	3안		
49A, B / 59A, B / 74 / 84A	욕실 고급화	국산 도기/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류 한스그로헤 수전류	-	49A	2,390,000			
					49B	2,390,000			
					59A	3,400,000			
					59B	3,400,000			
					74	3,400,000			
					84A	3,400,000			
49 A, B / 74 / 84 A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침실1 드레스룸 폴대형 시스템선반 (벽: 도배)	침실1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선반	-	49A	950,000			
					49B	700,000			
					74	1,000,000			
					84A	1,700,000			
59 A	침실3 라이프업 수납	침실3 미설치	슬라이딩 도어 + 불박이장	-	59A	4,800,000		침실 2, 3 불박이장과 중복선택 불가	
59 B	침실2 라이프업 수납	침실2 미설치	슬라이딩 도어 + 불박이장	-	59B	5,000,000		침실 2, 3 불박이장과 중복선택 불가	
49 A, B	침실2 불박이장	미설치	설치	-	49A	950,000			
					49B	950,000			
59 A, B / 74 / 84 A	침실2, 3 불박이장	미설치	설치	-	59A	1,900,000			침실3 라이프업 수납과 중복선택 불가
					59B	1,800,000			침실2 라이프업 수납과 중복선택 불가
					74	2,100,000			
					84A	2,100,000			
49 A, B / 59 A	라이프업 키친1	벽 도배마감 + 국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0인치)	다이닝 공간 아트월 마감(600X1,200) + 외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3인치)	-	49A	1,100,000			
					49B	1,100,000			
					59A	1,200,000			
59 B	라이프업 키친2	미설치 벽 도배마감 + 국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0인치)	장식장 + 다이닝 공간 아트월 마감 (600X1,200) + 외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3인치)	-	59B	2,800,000			
74	라이프업 키친3	미설치 벽 도배마감 + 국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0인치)	히든주방 슬라이딩도어 + 다이닝 공간 아트월 마감 (600X1,200) + 외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3인치)	-	74	3,200,000			
84 A	라이프업 키친4	주방 알파룸 + 국산 주방수전 + 주방 TV폰(10인치)	주방, 알파룸 통합 팬트리 + 장식장 + 히든주방 슬라이딩도어 + 외산 주방수전 + 서랍재형 아일랜드 + 주방 TV폰(13인치)	-	84A	6,600,000			

- ※ 59A, B 타입의 라이프업 수납 옵션 미선택시 도어는 목창호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 라이프업 키친 옵션은 주방 및 다이닝 공간을 특화하는 선택 품목이며, 평형별로 제공 품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9B / 84A 타입의 라이프업 키친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장식장 상판은 주방 벽/상판 마감재와 관계없이 세라믹 타일로 시공됩니다.
- ※ 49A, B / 59A / 74 타입의 라이프업 키친 옵션 선택시, 다이닝 공간 벽면 아트월은 해당 타입의 거실 아트월과 동일합니다.
- ※ 49A, B의 침실2 불박이장, 59A, B / 74 타입의 침실 2, 3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매립형 불박이장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시 불박이장의 구성은 전 타입 동일하며, 침실 크기에 따라 가구의 길이 및 규격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욕실 고급화 상품 미 선택 시 양변기: C432(계림요업), 세면기: L307S(계림요업), 세면기수전: DD-330ES(다다), 욕조수전: DD-101ES(다다), 샤워수전: DD-1621DAR(다다) 제품 이 설치 됩니다.
- ※ 욕실 고급화 상품 선택 시 비데일체형양변기: C339000B / C833000E(아메리칸스탠다드), 양변기: C319500A / C437500T(아메리칸스탠다드), 세면기: C155701L/C605700Z(아메리칸스탠다드), 공용욕실 세면기수전: #72020(한스그로헤), 부부욕실 세면기수전: #71251(한스그로헤), 욕조수전: #72400+27776+28537(한스그로헤), 샤워수전: #27268+26724+26332(한스그로헤) 제품이 설치 됩니다.
- ※ 라이프업 키친 옵션 선택 시 주방 수전은 #72800(한스그로헤) 제품이 설치되며, 옵션 미 선택 시는 DD-2750AN(다다) 제품이 설치 됩니다.

▪ 조명기구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금액	비고
49A	특화조명기구	기본 LED조명	특화조명기구(거실, 주방, 식탁)	1,700,000	
49B				1,700,000	
59A				1,800,000	
59B				2,300,000	
74				2,700,000	
84A				2,700,000	

▪ 빌트인 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쿡탑	전타입	1안	쿠쿠전자	CIHR-D302FB	550,000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2안		CIRS-FL301FB-S	650,000	인덕션 3구
전기오븐	전타입	1안	삼성전자	NQ36A6555CK	450,000	일반형
		2안		NQ50T8539BK	85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전타입	1안		DW60A5055BB	700,000	12인용, 가구마감
		2안		DW60A8575FG	1,290,000	12인용, 비스포크(새틴베이지)
오브제 2컬럼 패키지 냉장고	49A B	1안	LG전자	BC1F1AA/BC1L1AA1	2,850,000	클라스(베이지)
오브제 3컬럼 패키지 냉장고	59A B, 74, 84A	1안		BC1K1AA1/BC1F1AA/BC1L1AA1	4,460,000	클라스(베이지)
드레스룸 세습기	49A B, 74, 84A	1안	코스텔	CDD-600B	780,000	천정형
	59A B	1안		CDD-600B	780,000	천정형, 침실2, 3 라이프업 수납 선택 시 선택 가능

▪ 시스클라인 (세대 환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안	장비 대수	제조사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49A B	1안	2대	자이에스 앤디	거실 + 침실1	1,890,000	
	2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	2,750,000	
59A B	1안	2대		거실 + 침실1	2,04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770,000	
74	2-1안	3대		거실 + 침실1 + 침실2(또는 침실3)	2,910,000	침실2, 3 라이프업 수납 선택 시
	1안	2대		거실 + 침실1	1,890,000	
	2안	2대		거실 + 주방	2,040,000	
	3안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2,910,000	
84A	4안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4,640,000	
	1안	2대		거실 + 침실1	1,890,000	
	2안	2대		거실 + 주방	2,040,000	
	3안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2,910,000	
	4안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5,510,000		
	4-1안	5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4,640,000	라이프업 키친 선택 시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조건 및 일정

구분	납입금액	납입시기
계약금	1,500,000(정액제)	계약체결시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총 금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입주시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조건 및 일정

구분	금융기관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393301-04-101820	대우건설(외2)
잔금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대우건설(외2)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명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착오납부로 환불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환불이 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국민은행 393301-04-101820)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6년 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완납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할. 단,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입주중 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 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180세대 (일반분양 586세대)

■ 49㎡A 215세대	■ 49㎡B 99세대	● 생활폐기물보관소	● 외부엘리베이터
■ 59㎡A 90세대	■ 59㎡B 144세대	● 실외기	● 외부계단
■ 74㎡ 12세대	■ 84㎡A 26세대	● D/A	--- 구역경계선



※ 상기 단지배치도,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84B 84A 84A 74 84A	59A 59A 59B 59A	39 39 39 39 49B 49B 59A 59A	59A 59A 59A 59B 59A 59A	49A 49A 49A 49B 49A 49A	49A 49A 49A 49B 49A	59A 59A 59A 59B 59A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
59A 59A 59A 59B 59A 59A	59A 59A 59A 59B 59A 59A	59A 59A 59A 59B 59A 59A	84B 84A 84A 74 84A	84B 84A 84A 74 84A	84A 74 84A 84A 84B	84B 84A 84A 74 84A

※ 상기 내용은 편집/인쇄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9A 234세대 중 일반분양 215세대

발코니 확장형



49B 103세대 중 일반분양 99세대

발코니 확장형



59A 797세대 중 일반분양 90세대

발코니 확장형



59B 213세대 중 일반분양 144세대

발코니 확장형



74 149세대 중 일반분양 12세대

발코니 확장형



84A 440세대 중 일반분양 26세대

발코니 확장형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전시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으로 인한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에 따른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확장 시 실제 사용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사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시 사양(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